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11. 30 선고 2020가단12329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수정, 이광교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10. 5.

판 결 선 고 2022. 11. 30.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1. 피고와 C 사이에 2019. 12. 30. 체결된 1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1. 피고와 C 사이에 2020. 3. 3. 체결된 1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드단103568)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1. 9. “C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2018. 11.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2018. 12. 29. 확정되었다.

나. C의 딸인 피고는 2020. 2. 21. 안양시 만안구 D건물 E호(이하 ‘D건물’)에 관하여 2019.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F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2억 8,92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D건물 부동산등기부상 매매목록에 기재된 거래가액은 2억 9,300만 원이다.

다. C는 2018. 7. 16.부터 피고와 함께 안양시 만안구 G건물, H호(이하 ‘G건물’)에 거주하다가 2020. 3. 3. D건물에 전입하였다.

라. 원고는 C를 상대로 재산명시 신청(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카명10275)을 하여 2019. 3. 12. 위 법원은 피고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C는 이에 따라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는데, 그 중에는 G건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통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 발생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G건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은 C의 재산에 해당한다. 그런데 C는 무자력 상태에서 원고의 판결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D건물 매매계약일인 2019. 12. 30. 피고에게 G건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증여하여 피고가 위 1,000만 원을 D건물 매매대금 그 자체 또는 D건물 매수를 위한 대출 이자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주위적으로는 2019. 12. 30.자 1,000만 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설령 G건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이 D건물 매매대금 또는 대출원리금 상환에 사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와 C가 G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고 D건물로 이사한 2020. 3. 3.에는 C가 G건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받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분명하므로, 예비적으로 2020. 3. 3.자 1,000만 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2) 피고

피고는 2017. 3. 3. 안양시 만안구 G건물, I호 임대차계약을 하기 위하여 960만 원을 신용대출 받았고, 그 후 G건물(H호)로 이사하며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기존 I호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2022. 5. 3.자 의견서의 '1,000,000만원'은 오기로 보인다)을 그대로 G건물 임대차보증금으로 하였다. 피고는 C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G건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이 있고 이는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G건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증여 당시(2019. 12. 30. 또는 2020. 3. 3.) 이미 성립해 있었으므로, 위 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사해행위 인정 여부

1)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C가 2019. 12. 30. 또는 2020. 3. 3. 피고에게 G건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에 대한 나머지 주장을 살펴보지 않고도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우선, C가 G건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받아 보유하다가 피고에게 주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건물 매매대금 또는 매수를 위한 대출원리금상환 재원이 G건물 임대차보증금이었다는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 단순히 피고의 나이, 소득에 비추어 피고가 D건물 매매대금을 부담할 능력이 안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C가 피고에게 G건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증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1) D건물 매매대금은 2억 9,300만 원인데, 피고는 2020. 2. 21. F에서 D건물을 담보로 2억 4,100만 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같은 날 J은행에서 3,4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2,200만 원을 K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의 아버지 L은 2019. 12. 23. 300만 원, 2020. 1. 11. 500만 원, 2020. 2. 21. 500만 원, 2020. 3. 1. 500만 원, 2020. 3. 31. 1,000만 원 합계 2,800만 원을 매도인 K에게 송금하였다.

피고는 D건물 매매계약 전 M과 'N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위 계약을 해제했는데 2019. 12. 24. M으로부터 200만 원을 돌려받아 같은 날 위 200만 원을 O에게 송금하였다.

(2)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L이 매달 피고의 F 계좌로 대출원리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입금하면 같은 날 또는 다음날 그 금액 전부 또는 일부가 F 대출원리금으로 지급된 사실, L이 2020. 3. 22., 2020. 8. 24., 피고의 P은행 계좌로 J은행 대출원리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입금하였고 다음날 그 돈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해 출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반면, G건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이 F 또는 J은행 대출원리금 상환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2) 설령 C가 G건물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일시적으로 소유하다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 조달 경위에 비추어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변론 전체의 취지(2022. 5. 3.자 피고의 의견서 첨부서류)에 의하면 피고가 2017. 3. 3. Q은행에서 96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2017. 3. 3. G건물과 같은 건물 I호 임대차계약을

하기 위하여 960만 원을 신용대출 받았고, 그 후 G건물(H호)로 이사하며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기존 I호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그대로 G건물 임대차보증금으로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또한 위 대출원리금은 피고의 아버지 L이 피고의 Q은행 계좌로 입금한 돈으로 상환되었다(을 제1, 2호증). 이처럼 G건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은 피고가 대출받아 마련한 돈이고 C가 그 상환에 기여한 바는 없다. 단지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명의가 C로 되어 있어 보증금을 수령하게 됨에 따라 1,000만 원이 일시적으로 C의 적극재산을 이루고 있었던 것에 불과한데, 그 1,000만 원의 대출채무자로서 상환책임이 있는 피고에게 이를 증여한 것을 두고 적극재산 감소라는 외관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사해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임대차보증금 조달 경위와 그 이후 상환 과정을 고려할 때 C와 피고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증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증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해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림